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1.12.7.)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유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치유대상자 이외에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주된 부양자·양육자 등 그 밖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

나. 분원의 설치 등(안 제3조)

- 분원 설치 시 행안부장관이 승인,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하며 분원설치·운영기준 충족 필요

다. 임원(안 제4조)

-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공익단체에 대한 기준 명시

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의 계약에 따름

마. 운영평가의 실시(안 제8조)

-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경영상태 · 사업 · 치유만족도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바.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안 제9조)

-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 최초 시행일(2022년 6월 8일) 이전부터 유사명칭을 사용중인 경우 등 사용금지 예외사항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이외에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제3조(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법 제6조에 따라 분원을 설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분원 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치유센터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분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분원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의 분원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 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란 법 제2조제2호의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피해자 관련 단체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공익법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학술·의료·법률·종교 등의 단체를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공익법인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치유센터는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재무상대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치유센터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평가: 연구·개발, 교육·홍보, 국제협력 등의 결과
3.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평가: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치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이 법 최초 시행일(2022년 6월 8일) 이전부터 유사 명칭을 사용 중인 경우

3. 유사 명칭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분원의 설치·운영 기준(제6조 관련)

치유시설	치유인원	행정인원
전용면적 300㎡ 이상	7명 이상	3명 이상

비 고

- 가. 분원의 설치·운영기준은 분원의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와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나. 치유시설은 분원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분원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 다. 치유시설은 대기실(휴게공간), 상담실, 치유실 등 치유대상자의 편의·치유를 위한 공간과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라. 위 설치 기준은 분원 1개소마다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치유센터가 아닌 자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치유센터가 아닌 자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분원설치 승인신청서

신청기관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본원	
		분원	
	명 칭	본원	
		분원	

치유·재활 프로그램	치유대상자수
	명
	주요사업내용 (※ 목적, 주요 사업 등 기술)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관 운영계획	연간 이용인원	소요예산
	명	천원
	운영조직 구성	
	연간 주요 일정	

시설현황	
------	--

기타	
----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원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료 : 정관 변경(안)

년 월 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장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60